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호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63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 : 윤호중·김영배·김영환

김종민 • 문진석 • 박정현

복기왕 • 이수진 • 정준호

조승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,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,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「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」을 제정하면서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,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「국가재정법」 별표 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」(의 안번호 제856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72. 「사회연대경제기본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